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명: DB글로벌로보틱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H) [주식] (펀드코드: BR719)

2. 변경 시행일 : 2022.1.14(금)

3. 변경 내용 요약

- 운용인력 변경 (책임: 김다혜-)이동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다혜	이동준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8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인력 변경(책임: 김다혜-)이동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다혜	이동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p>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p>	<p>④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생략)</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중전과 동일)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중전과 동일)</p>
<p>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최초설정시 1좌당 1원)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 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최초설정시 1좌당 1원)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 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